

 지식경제부 <small>Ministry of Knowledge Economy</small>	보도자료	http://www.mke.go.kr
<p>'11년 6월 2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	
<p>자료문의 : 제품안전조사과 정기원 과장(509-7250), 이위로 연구관(509-7251)</p>		

“소비자 암행어사! 불법제품 꼼짝마!!”
 - 제품안전지킴이단 불법·불량제품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개시 -

- 주부 박모씨(35)는 어린이날 선물로 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(비비탄총)을 구입하려 동네 문구점에 들렀을 때, **인증마크가 없거나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**을 발견했다.
 -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상품인데도 **불법·불량제품이 버젓이 시장에서 유통**되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.
 - 이를 계기로 **소비자가 참여하여 불법제품을 감시하는 안전지킴이단**에 동참하게 되어,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일조한다는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.
- 기술표준원(원장: 허경)은 **소비자 스스로 시중에 유통중인 불법·불량제품을 감시하는 안전모니터링 사업**을 200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.
 - 안전모니터링 사업에 참가하는 **150명의 제품안전지킴이**들은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등 4개 소비자단체* 회원들로,
 - * 한국소비생활연구원, 한국생활안전연합,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, 전국주부교실중앙회
 - 금년에는 6월초부터 11월말까지 어린이용품을 비롯한 각종 **공산품과 전기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**을 하게 된다.

- 지난해까지 모니터링과정에서 적발된 불법·불량제품에 대해서는 계도위주의 자율시정을 권고하였으나, 금년부터는 **제조·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**한다.
 - 안전지킴이들이 불법·불량제품을 발견했을 경우에 소속 소비자단체가 **제조자 및 판매자에게는 자율시정을 권고**하고, 관련내용을 정부에 통보하며, 정부는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**행정조치**(과태료부과, 개선명령 등)를 할 예정이다.
 - 안전지킴이단은 자율적인 시장감시와 **불법·불량제품의 제조·유통을 막는 홍보대사로**, 소비자가 보다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왔다.
 - 이로 인해 **공산품·전기용품의 위해사례 접수 증가율도 낮아지고**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 - * 전기용품·공산품 위해사례 접수현황: 34%('07)→32('08)→**25%('09)→3%('10)**
 출처: 한국소비자원, 접수 증가율 계산식: <금년접수건수 - 전년접수건수>/전년접수건수
 - 기술표준원에서는 안전지킴이단 이외에 일반 소비자들도 불법·불량제품을 근절하기 위하여, **제품안전포털사이트 (www.safetykorea.kr)**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 - * 불법·불량제품은 제품안전포털사이트에 게재되어 소비자에 공지됨
- 첨부 : 제품안전모니터링 사업. 끝.

첨부

제품안전모니터링 사업

1 추진배경 및 목적

- 제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·불량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
 - * 정부의 시판품 조사 및 시·도의 사후단속만으로 소비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임
- 시장을 상시 감시하여 불법·불량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위해정보를 수집·조치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 도입 필요

2 모니터링 운영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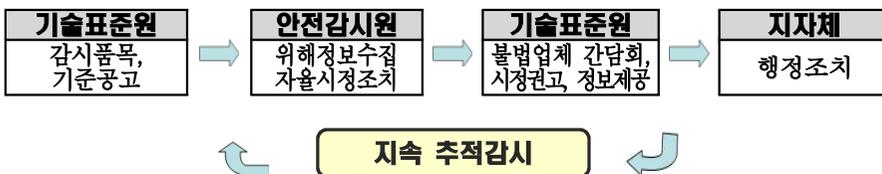
- 소비자단체회원을 중심으로 소비자 안전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분야별 유통제품에 대한 시장감시

< 모니터링 운영체계 >

구분	운영주체	기능 및 역할
주관기관	기술표준원	- 시장감시 정책·지침 마련 - 분야별 모니터링 운영주체 선정
모니터링 운영	분야별 모니터링 단체	- 제품안전감시원과 운영위원회 운영 - 제품안전감시원 추천·관리
시장감시	모니터링요원(150명)	- 시중 위해정보 수집 및 보고 - 자율시정요구, 행정조치 의뢰 등

3 모니터링 방법 및 내용

< 안전모니터링 흐름도 >



□ 모니터링요원

- 시중 불법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및 안전관리제도 홍보 활동
- 조사표에 의거 할인마트, 백화점 등 매장을 직접 방문 조사
- 표시사항 확인을 통해 불법제품 여부 모니터링, 자율시정조치 등
 - * 불법제품의 신속한 제거 및 소비자의 자발적 시장감시를 유도하여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토록 하는 문화조성

□ 기술표준원

- 분야별 모니터링 운영주체 선정, 시장 모니터링 정책·지침 마련
- 안전모니터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율시정권고 미이행업체에 대한 지속 단속
 - 불법제품은 고발, 불량제품은 리콜 및 지자체 행정조치(수거·파기) 요청
 - 제품안전포털사이트에 제품사진 정보 게재

4 모니터링단 현황

분야	위탁운영기관(감시원수)	감시원수	지역별 감시원	
			서울	지방
문구점	전국주부교실중앙회	75명	25	50
공산품	한국생활안전연합	25명	3	22
안전품질표시	녹색소비자연대	25명	13	12
전기제품	한국소비생활연구원	25명	8	17
계		150명	49	101